# 2024년 가평군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(안)(수정)

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「2024년 가평군 장학생 선발」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일 가 평 군 수

### □ 신청안내

○ 신청기간: 2024. 2. 27.(화) 9:00부터 ~ 3. 21.(목) 18:00까지 (24일간)

O 신 청 인: 보호자와 신청학생 연명으로 작성

○ 신청장소: 거주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

○ 신청방법: 으뜸·특기·복지·환경·보금자리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구비서류 첨부 제출

O 구비서류

구 분	으뜸	특기	복지	환경	보금자리
• <b>장학생 신청서 &lt;규정양식&gt;</b> ※ 2024년 기준으로 작성	<u> </u> 필수	필수	필수	필수	<u> </u>
· 성적증명서 1부	1		,		
· 복학(예정)증명서 1부					
※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					
* 재학생은 직전학년 1·2학기 성적,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	필수	필수	필수	필수	필수
적,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·2학기 성적					
※ 대학교 신입상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,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					
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 하여 점수 환산					
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·모 기준)	해당자	해당자	   해당자	해당자	해당자
※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 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,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	에당시	에당시	에당시	예당시	예당시
	필수	필수	필수	필수	필수
· 대학생의 경우 관내 학교(초·중·고 중 1개) 졸업증명서 1부	(대학생)	(대학생)	(대학생)	(대학생)	(대학생)
• 2024학년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	필수	필수	필수	필수	필수
· 입상증명서 1부	_	필수	_	_	_
※ 직전 학년도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성적 해당		21			
·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	_	_	필수	_	_
-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			21		
·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(건축물)를 소유					
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					
* <b>공통</b> : 토자이용규제정보사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 조회 11차본 1부					
※ <u>거주자</u> : 부·모·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				77] A	
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	_	_	_	필수	_
(신청·지급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수원관리지역일 것, 현재까					
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만 해당됨) ※ <b>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</b> :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					
* <del>조기 및 인독을 조교기</del> · 조기 및 인독을 조교기인의 가장 오래된 토지(임야)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					
• 부동산임대차계약서(월세계약서) 사본 1부	_	-	-	-	필수
• 월세 납입내역 증빙(계좌이체 내역 등) 1부	_	-	_	-	필수
• <u>부모</u> 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<u>각 1부</u>					
※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축	필수	필수	_	필수	필수
※ <b>부모 중 한명만 가입한 경우</b> 가입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<u> </u>	57	_	<u> </u>	글구
1부, 미가입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					
• 주민등록 등·초본(주소이력 포함) 각 1부					
※ 초본의 경우, 부·모·학생 중 가평군 관내 3년 이상 거주자의 초본	필수	필수	필수	필수	필수
※ 장학생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제공동의사에 서명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(단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하야 함)					
	1	l .		I	

#### □ 장학생 신청자격

- ○(공통)장학생 선발계획 **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**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
  - **중학교에 재학** 중인 학생 및 **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** 중인 학생
  - 관내 학교(초·중·고등학교 중 1개 이상)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(전문 대학 포함)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학생(휴학생 제외) 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

O(개별)다음 장학생의 각 종류별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
종류	대상	신 청 자 격	비고
으뜸	고등학생	.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	예체능 점수 제외
	대학생	.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3.0 이상인 학생(4.3 만점의 경우 2.7 이상)	
특기	중학생 (2,3학년) 고등학생 대학생	. 직전 학년도 도단위 이상의 예능· 체능·기능 및 문학 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	
복지	중학생 (2,3학년) 고등학생 대학생	.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, 소년소화정, 「한부모기쪽자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보호받는 군민 또는 자녀인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	
환경	고등학생 대학생	. 공고일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【표1】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	
보금자리	대학생	. 공고일 현재 관외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공고일 이후까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빙이 가능한 사람	* LH임대주택, 기숙사 등 제외 ** 1가구 2인 이상 지원 불가 ** 임차 주소지에서 뷔(父) 또는 모(화)와 주민등록상 함께하는 자 제외 ** 비수도권, 수도권 8:2 비율로 선발예정

- ※ 복학예정 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종류와 상관없이 휴학직전 학년도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함
- ※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,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,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일하여 점수 환산

#### ○ 보금지리 장학생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사항

- 계약기간: <2024. 1. 1. ~ 12. 31.>의 기간 중 최소 8개월 이상

- 임차인 명의: 본인·부·모 중 1인

- 소재지: 신청자(학생)가 재학 중인 학교 인근

- 계약형태: 월세계약(LH임대주택, 기숙사 등 제외)

# 【표1 상수원관리지역】

읍 면	지 역(리)				
가 평 읍	<u> 개곡2리, 읍내8리, 산유리, 이화리, 복장리, 금대리, 달전1리</u>				
설 악 면	신천 1,2,3,4리, 선촌 1,2,3리, 회곡 1,2리, 사룡리, <u>송산 1,2리</u> , 가일 1,2리 방일 1,2,3리, 천안 1,2리, 이천 1,2리				
청 평 면	청평 1,2,3,4,5,6,7,8,9,10리, 하천 1,2리, 대성 1,2,3리, 삼회 1,2리, 호명리, 고성리				
상 면	항사리, 덕현리, <u>임초1리</u>				
조 종 면	<u>대보2리</u>				

- ※ 위 지역 중 밑줄 친 가평읍 7개리와 설악면 송산리, 상면 임초1리, 조종면 대보2리는 **상수원 관리지역이 일부만 해당되므로 지역거주요건이나 토지 및** 건축물 소유 여부를 토지이용계획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확인하여 제출
- ※ 장학생 신청 시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각 읍·면에 반드시 확인
- O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(다음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)
  - 가평군 장학생 선발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
  -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 재학생
  - 가평군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학교,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**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** 
    - ※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등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청가능
    - ※ 보금자리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의 경우는 예외
  - 해당 연도 가평장학관 입사생

# □ 장학생 선발방법,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

- O 장학생 선발방법
  - 가평군 장학생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읍·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「가평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
  - 장학생 종류별 평가 항목 (100점 기준)
    - 으뜸장학생: 학업성적 95점 + 소득수준 5점
    - 특기장학생: 입상성적 80점 + 학업성적 15점 + 소득수준 5점
    - 복지장학생: 보호대상 50점 + 학업성적 50점
    - 환경장학생: 상수원관리지역 거주(토지 및 건축물 소유)기간 50점 + 학업성적 45점 + 소득수준 5점
    - 보금자리장학생: 학업성적 50점 + 소득수준 50점
- 가산점 부여
  - -「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제2조제3호에 따라
  - -가평군 장학생 신청자 중 두 자녀 이상 해당자: 가산점 2점
  - -가평군 장학생 신청자 중 세 자녀 이상 해당자: 가산점 3점
  - -가산점은 18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 2조에 따른 대학생을 포함.
  - ※ 자세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은 『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』 별표 참조
- O 2024년 장학생 선발 예정인원: 250명(중학생16명, 고등학생 80명, 대학생154명)
  - 으뜸장학생: 61명(고등학생 30명, 대학생 31명)
  - 특기장학생: 11명(중학생 4명, 고등학생 4명, 대학생 3명)
  - 복지장학생: 54명(중학생 12명, 고등학생 20명, 대학생 22명)
  - 환경장학생: 54명(고등학생 26명, 대학생 28명)
  - 보금자리장학생: 70명(대학생 70명)
    - \*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출결상황으로 대체함
    - \*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
    - \* 결석일수(질병결석 제외) 1일당 1점씩 차감
    - \*보금자리 장학생의 경우 비수도권, 수도권 8:2 비율로 선발 예정

- O 장학금 지급액 및 시기
  - 장학금 최대 지급액(1년 기준)
    - 중학생 60만원, 고등학생 90만원, 대학생 300만원
  - 장학금 지급시기: 연 2회/장학금의 최대 50%씩 지급(상반기, 하반기)
    - 중·고등학생
      - 최초 장학생 선발인원에 대하여 장학금의 50% 지급(상반기), 1차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 해당 유무 확인 후 적합자에 한하여 장학금의 50% 지급(하반기)
    - 대학생
      - 1차 지급: 최초 장학생 선발인원의 1학기 등록금에서 타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실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 장학금 지급(상반기)
      - 2차 지급: 1차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 및 2학기 등록금과 타장학금 수혜액을 조회한 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급(하반기)
      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5(중복지원의방지)에 따라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으로서 타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실납부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 지원
        - ※ 보금자리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의 경우는 예외
      - 보금자리 장학생의 경우 1가구 2인 이상 지원 불가(1가구 1인 지원)
  - 장학금은 『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 제26조에 따라 1학기는 상반기에, 2학기는 하반기에 지급예정.

# □ 선발결과 안내

- 가평군 장학생 확정·통보: 2024. 4. 25.(목) 18:00(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)
- O 선발자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: 2024. 4. 29.(월) 18:00까지
  - \*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
- O 장학금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계좌로 입금

#### □ 장학금의 지급 정지

- ○「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25조(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)
  -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    - 1. 학교에서 징계(퇴학, 정학)처분을 받았을 경우
    - 2. 학교를 휴학하거나 1학기를 마친 후 졸업한 경우
    - 3.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부모 모두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제21조 제1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  - 4. 경기도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
    - 5.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    - 6. 학교장 또는 추천기관에서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
    - 7. 제21조제1항제3호의 복지장학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 가정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되었을 경우
    - 8. 제21조제1항제4호의 환경장학생이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권을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
    - 9.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, 연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장학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# □ 기타 유의사항

- O 기타 자격요건 및 세부기준은 『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 및 『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』 참조
- O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(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)

-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외 부 또는 모(가평군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인 경우)의 서명 필수
-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신청학생 본인의 주민번호는 반드시 다 표기된 걸로 제출(학자금이중지원방지 프로그램 등록 시 학생 주민번호 반드시 필요)
- O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평군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
- 가평군청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gp.go.kr">http://www.gp.go.kr</a>) 접속 → 상단의 [참여군정]
   → [알림마당] → [고시공고]란 혹은 홈 화면 중앙 메인배너 클릭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평생교육사업소 (☎031-580-2471) 또는 각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

#### - << 문의처 >> ---

☞ 가평읍 031-580-4016

♡ 상 면 031-580-4162

☞ 설악면 031-580-4061

☞ 조종면 031-580-4212

☞ 청평면 031-580-4111

☞ 북 면 031-580-4277

♡ 환경정책과 031-580-2446(상수원관리지역문의)